

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

(한경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8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2. 11.

발의자 : 한경혜 · 진선미 · 박원서 ·
방민수 · 서희원 · 양평호 ·
제갑섭 · 김영민 · 김연후 ·
이승일 의원 (10명)

1. 제안이유

장년층 세대가 조기은퇴, 노후불안, 생계문제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. 사회적 참여를 희망하고, 할 수 있는 장년층에 대한 우수한 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 및 일자리 지원 등이 필요하기에 관련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(안 제2조 ~ 안 제3조)
- 나.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(안 제4조 ~ 안 제5조)
- 다.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라. 지원시설 및 위탁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 ~ 안 제8조)
- 마. 인생이모작위원회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제1항, 제2항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있음
- 다. 합 의: 어르신아동복지과(인생이모작팀)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
 - 1) 전 문: 별첨
 - 2) 입법예고 (2019. 2. 12. ~ 2. 16.)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장년층”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인생이모작”이란 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하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① 구청장은 장년층 인생이모작사업의 지원 대상을 강동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장년층으로 한다.

-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의 연령을 장년층 이외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사업)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.

1.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
2. 교육지원 사업

3. 문화·여가지원 사업
4. 건강증진지원 사업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재정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7조(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)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지원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
제8조(시설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위원회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생이모작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2.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